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2025. 4. 2. 제정)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재단 정관의 잉여금 처리 관련 조항과 상이한 사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제37조에 따라 정관 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잉여금 처리 규정 개정 (안 제28조)

-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규정 반영
- 잉여금 기본재산에 편입 시 이사회 의결 절차 명확화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를 “이 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로, “사용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재원은 같은 조례에 따라 반납 처리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202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미 문화재단의 잉여금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출연금의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재단 목적사업 등에 잉여금 사용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집행잔액 반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계연도 말 무리한 예산 집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시에 반납해야 할 재원과 재단이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혼재되지 않도록 재원별 회계 처리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